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361

발의연월일: 2024. 11. 7.

발 의 자:임이자・우재준・송언석

유용원 · 김성원 · 최수진

박덕흠 • 이상휘 • 배준영

김태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고용보험 징수제도는 2011년 징수제도 통합 이후 전년도 보수총액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당해 연도 실 보수와 시차가 존재하고, 사업주는 국세 소득신고와 보수총액 신고를 이중으로 해야 하는 부담이 있음. 따라서 사업주의 행정부담 경감 및 보수신고 편리성제고를 위해 국세청 신고 정보를 보험료 부과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정보 연계 확대가 필요함.

이에 개정안은 고용보험 보험료 부과 시 국세청 등 소득정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6조의 10 등).

법률 제 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16조의10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 항) 중 "제5항까지"를 "제6항까지"로 한다.

⑤ 제1항, 제2항,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소득세법」등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보수총액을 공단에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기재 사항의 누락, 오류, 수정 등의 사유로 보수총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아 혂 개 정 제16조의6(조사 등에 따른 월별보 제16조의6(조사 등에 따른 월별보 험료 산정) ① 공단은 사업주가 험료 산정) ① --------- <u>মা6</u>ই----제16조의10제1항부터 제5항까 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사 실과 다른 때에는 사업주에게 미리 알리고 그 사실을 조사하 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월평 균보수를 결정하여 월별보험료 를 산정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1. ~ 3. (생략)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의10(보수총액 등의 신고) 제16조의10(보수총액 등의 신고) ① ~ ④ (생 략)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 제2항, 제4항에도 불 <신 설> 구하고 사업주가 「소득세법」 등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 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신 고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보수총 액을 공단에 신고한 것으로 간 주한다. 다만, 기재 사항의 누 락, 오류, 수정 등의 사유로 보 수총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⑤ (생략)

- ⑥ 제1항부터 <u>제5항까지</u>에 따른 신고사항, 신고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 <u>⑦・⑧</u> (생 략)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	<u>하다.</u>		

- <u>⑥</u> (현행 제5항과 같음)

<u>⑧</u>·<u>⑨</u> (현행 제7항 및 제8항과 같음)